

B/L관련 제 문제 및 대책

시스마 대표(전 한진해운 법무보험팀 재직) 이석행

1. 서언

‘B/L은 곧 화물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B/L 발행시부터 회수될 때까지 신중히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행상 Letter of Indemnity(배상장)를 받고 화물을 인도해 주고 있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 있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2. B/L과 관련한 문제점들의 유형

- 1) 화주 자신이 발행한 L.O.I와 상환한 화물인도 경우
- 2) 선적전 화물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으로부터 L.O.I를 받고 Clean B/L 발행하는 경우
- 3) Switch B/L 발행시 1st B/L Full Set를 회수치 않고 2nd B/L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
- 4) 선 B/L (Ante dated B/L) 발행경우
- 5) B/L상 부실기재
- 6)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았다는 이유나 제 3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화물인도 중지 요청을 할 시 이를 무시하고 B/L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한 경우
- 7) 자가보세장치장 또는 일반영업용 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이 밀반출되는 경우
- 8) 운송인의 국·내외 대리점에서 B/L을 회수치 않고 임의로 D/O (Delivery Order)를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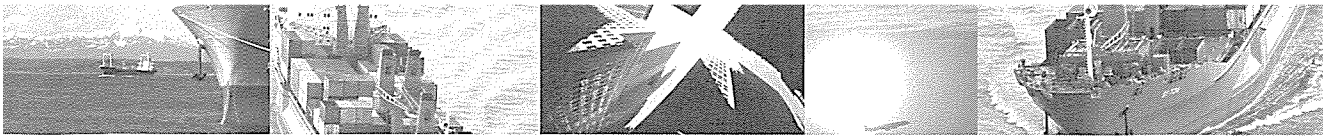
행하는 경우

- 9) 위조된 B/L 또는 위조된 Bank Guarantee 와 상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 10) 용선계약서에 ‘L.O.I와 상환하여 양하지에서 화물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명문 규정을 담은 경우
- 11) 1/3 B/L을 본선에 싣고 가서 양하지에서 이와 상환하여 화물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 12) Charter Party B/L의 재판관할(Juris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이 C/P상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과 불일치 하는 경우

3. 문제점별 대책

(1) 화주 자신이 발행한 L.O.I와 상환한 화물 인도 경우

- 1st Class Bank가 연대 서명한 L.O.I 또는 확실한 자력을 가진 화주의 L.O.I 이외에는 수령치 않는게 바람직함.
- Bank Guarantee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가액의 130% - 200%(송장가액을 넘는 부분은 Claimant가 소송제기시 소송비용 및 이익상실 등에 대한 클레임과 선박가압류 발생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를 운송인이 지정한 구좌에 Cash Deposit를 15개월 (화물 운송과 관련한 시효가 1년임을 감안) 동안 하도록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량의 벌크화물을 싣고 무작정 B/L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 운송인은 답답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됨. 육상에 화물의 저장 창고나 탱크가 있는지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그러한 근거를 전부 서면으로 남겨두고 그러한 화물을 수용할 Facility가 있는 경우 우선 운송인의 비용으로 그러한 시설을 수배하여 화물을 보관토록 해야 함.

○ 벌크화물선의 경우 많은 실무자들은 B/L과 관련한 문제도 Voyage Charterer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물운송계약은 Shipper와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Voyage Charterer 뿐만 아니라 Shipper에게도 항상 확인을 받아야 함.

(2) 선적전 화물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으로부터 L.O.I를 받고 Clean B/L 발행하는 경우

○ 이 행위는 선의의 B/L소지자를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Claimant가 아는 경우는 방어가 없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동 L.O.I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Enforcement)이 불가능 하게됨.

(3) Switch B/L 발행시 1st B/L Full Set를 회수치 않고 2nd B/L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해외대리점들이 Switch B/L 발행시 1st B/L Full Set를 회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함.
○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을 시 대리점 법인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대표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면각서(Letter of Undertaking)를 받아 두던지 필요시 Protecting Agent를 선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4) 선 B/L (Ante dated B/L) 발행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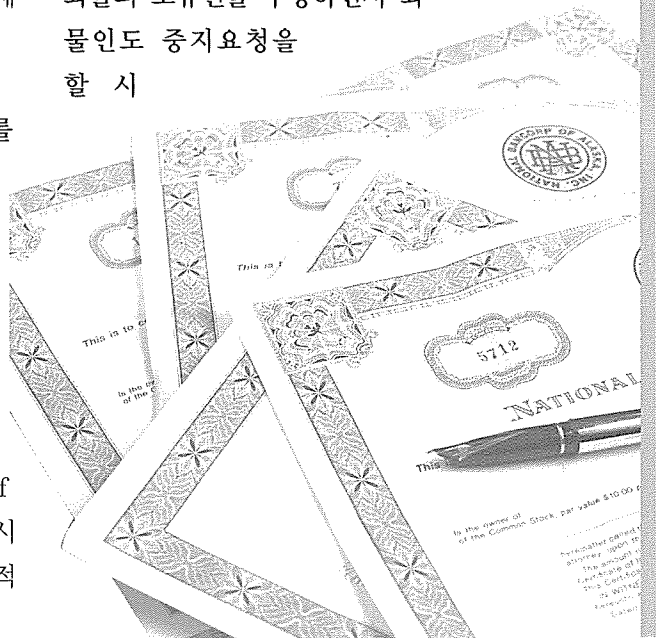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운송인은 L/C Term에 개입할 이 유가 없으며 만약 개입하여 Shipper의 요구에 따라 선 B/L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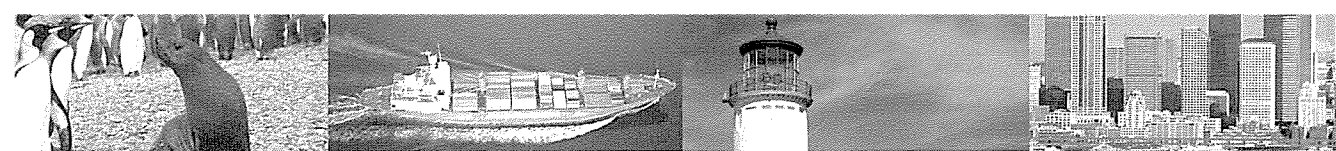
(5) B/L상 부실기재

○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압력에 의해 선적지 또는 양하지 등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B/L상 표기되는 경우, B/L 자체의 추정적 증거력 (Prima facie evidence) 때문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

○ 따라서, B/L상 표기와 관련, 의문이 생기면 P&I Club에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게 안전함.

(6)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았다는 이유나 제 3자가 화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화물인도 중지요청을 할 시





이를 무시하고 B/L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한 경우

○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밝혀질 때 까지 B/L과 상환해서도 화물인도를 해주면 안되게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화물 인도 중 지요청이 들어오면 운송인은 B/L소지자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소유권이 밝혀지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화물을 인도해줘서는 안됨.

(7) 자가보세장치장 또는 일반영업용 보세장치장에서 화물이 밀반출되는 경우

○ 직통관화물이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가는 화물 경우 일반적으로 B/L과 상환하여 화물이 인도되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화주가 지정한 일반영업용보세장치장에 화물을 보관중 밀반출된 화물에 대해 B/L소지자가

나중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됨.

○ 따라서, 보세창고에서의 밀반출을 방지하는 방법은 화주가 지정하는 창고보다도 운송인 자신이 직접 보세창고를 수배하여 화주가 B/L 제시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

(8) 운송인의 국,내외 대리점에서 B/L을 회수치 않고 임의로 D/O(Delivery Order)를 발행하는 경우

○ 확신할 수 없는 대리점이 선임되는 경우 Protecting Agent를 수배하거나 Representative를 직접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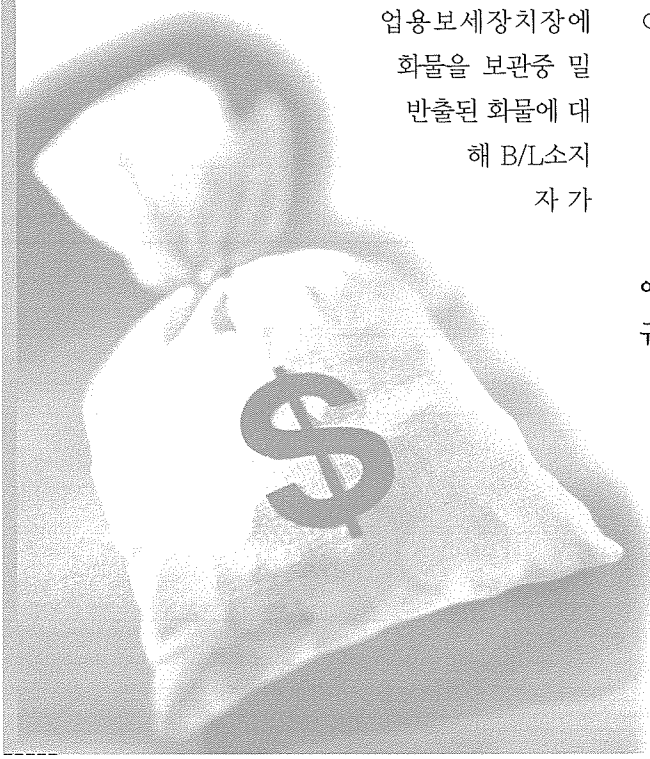
(9) 위조된 B/L 또는 위조된 Bank Guarantee와 상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 요즘은 칼라복사의 기술이 발달하여 자칫 위조된 B/L을 받고 D/O(Delivery Order)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망됨.

(10) 용선계약서에 'L.O.I와 상환하여 양지에서 화물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명문 규정을 담은 경우

○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C/P에 삽입하는 것은 운송인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 이므로 설령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나쁜 관행은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함.

(11) 1/3 B/L을 본선에 신고 가서 양지에서 이와 상환하여 화물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가급적 수용치 않는게 바람직 함.

○그러나, 그러한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 B/L 전 통(Full Set)에 하기의 문구를 B/L에 삽입토 록 해야 함.

“One original bill of lading retained on board against which delivery of cargo may properly be made on instructions received

from shippers/charters.”

(12) Charter Party B/L의 재판관할(Juris- diction)과 준거법(Governing Law)이 C/P상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과 불일치 하는 경우

○Charter Party B/L과 C/P상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일치시켜 Charter Party B/L를 발 행토록 주의해야 함.

2004년도 중국 휴무일 시행 스케줄

중국 국무원 시행방법 공포

중국 국무원은 관광, 교통운수, 생산경영활동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4 년도 휴무일 시행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절(五一) : 5.1(토)~5.7(금) 휴일 총 7일

- 법정휴일 : 5.1(토), 5.2(일), 5.3(월)

- 이 중 5월1일(토)과 2일(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5월4일(화)과 5일(수) 휴무일로 대체

- 5월6일(목)과 5월7일(금)도 휴무일로 하되, 대신 5월8일(토)과 9일(일)은 정상 출근

■ 국경절(十一) : 10.1(금)~7(목) 휴일 총 7일

- 법정휴일 : 10.1(금), 10.2(토), 10.3(일)

- 이 중 10월2일(토)과 10월3일(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10월4일(월)과 5일(화) 휴무일로 대체

- 10월6일(수)과 10월7일(목)도 휴무일로 하되, 대신 10월9일(토)과 10일(일)은 정상 출근